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7. 18 선고 2019가단1822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주식회사 C

2. D

변론 종결2019. 6. 20.

판결 선고2019. 7. 18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,036,944원 및 그 중 89,595,106원에 대하여 2018. 12. 3.부터 2019. 2. 11.까지는 연 9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근거 :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판사김홍도

별지